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학생자치회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의 학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 지도 능력을 개발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함은 물론 건전한 학풍 조성 및 본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성별된 봉사자로서의 인격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안에 둔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과정, 학점은행제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발전, 향상시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자치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및 동아리 등의 기구를 둔다.

제7조(학생지도위원회)

1. 본 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2.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회의 활동지도와 재정운용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한다.

제 2 장 학생자치총회

제8조(구성) 본 평생교육원 재학생으로 구성하되, 제장 4조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권한) 학생자치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

제10조(의장) 학생자치총회의 의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이 한다.

제11조(소집) 학생자치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자치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0분의 10이상의 요청이나 대의원회의 결의, 혹은 학생자치회 | 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학생자치총회의 소집은 10일 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1. 학생자치총회의 정기총회는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5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13조(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4조(구성)

1. 대의원회는 학년별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학년 당 과대표 및 2인씩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학년대표를 겸임할 수 있다.
3. 집행부의 인원은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단, 총무와 서기와 회계, 부장과 차장은 선출될 수 있다.
4. 대의원회 의장은 집행부 임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기구 및 선출)

1.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회의장은 부의장과 서기를 임명한다.

제16조(직무) 의장은 대의원의 회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하며 서기를 회무를 기록, 보관 등을 수행한다.

제17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7월 초부터 익년 6월 말까지로 하되 학기별로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
2. 학생자치회비의 책정
3. 학생자치회비의 책정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
5.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권
6. 대의원회의 의장 선출권
7.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의 불신임 발의권
8.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9. 집행부 인원 및 각 부장의 해임 요구권
10. 집행부 및 동아리에 대한 회계 감사권
11. 학교 당국 관계자, 집행부 및 동아리의 각 부장의 출석을 요구
12. 학교 당국이 행정에 대한 건의권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소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3월, 6월, 9월, 12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 대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소집은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의장이 필요로 소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제18조 1,6,7항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외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학생자치회 회장, 학생자치회 부회장

제21조(직위)

1. 학생자치회 회장은 학생자치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와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학생자치회 부회장은 학생자치회장을 보좌하며, 학생자치회장 궐위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22조(임기) 학생자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7월초부터 익년 6월 말까지 1년으로 하며, 회장은 2학기 이상, 부회장은 1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재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1. 학생자치회 회장은 운영위원회, 집행부 및 동아리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2. 학생자치회 회장은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며, 매학기 개강 후 30일 전까지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대의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 중 학생자치회 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4. 기타 학생자치회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5. 집행부 및 동아리 운영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각 부장을 해임하고, 이를 새로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신분보장) 학생자치회장, 부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5조(집행부 및 동아리)

1. 학생자치회 회장은 필요한 집행부나 동아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학생자치회 회장은 총무, 회계, 서기, 각부 부장 및 차장을 임명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6조(지위)

1.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2. 제21조 1항에 근거해 학생자치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27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임원, 학년 과대표로 구성한다.

제28조(업무 및 권한)

1. 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2. 학생자치총회의 제반사업 및 전체 예산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3.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4.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집행부 및 동아리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6.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7. 23조 4항의 동의권을 가진다.
8.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의결한다.
9. 동아리의 각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0. 규정외 특별한 사항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처리한다.

제29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회의는 학생자치회장의 요구나 의원 중 2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집행부

제31조(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2조(구성)

1.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각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자치회 회장은 총무, 회계, 서기 및 각 부장과 차장을 임명할 수 있다.
3. 각부 부장은 업무진행을 위해 차장을 둘 수 있다.

제33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각 부서의 사업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집행부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각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서(동아리)를 둔다.

- ① 총무
- ② 서기
- ③ 회계
- ④ 홍보부
- ⑤ 학술부
- ⑥ 성격통독부
- ⑦ 설교부
- ⑧ 상담, 축사부
- ⑨ 전도부
- ⑩ 기도부
- ⑪ 컴퓨터부
- ⑫ 해외선교부
- ⑬ 교회개척부
- ⑭ 영어부

4. 각 부서의 존속 및 신설은 학생자치회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제34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특별회비, 헌금, 찬조금, 보조금, 기타로 충당한다.

제35조(자치회비)

1. 본회의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이 2%-4%의 소정금액으로 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학생자치회 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2. 본회의 특별회비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모금할 수 있으며, 그 사용처는 상조비와 학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학생회비와 통합관리 한다.

제36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7월 초부터 익년 6월 말까지로 한다.
2. 전항의 회계연도는 2기로 나누되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37조(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집행부 및 동아리에서 편성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대의원회가 최종심의 확정한다.
2. 집행부 및 동아리는 대의원회 소집 15일 전에 예산을 공고 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1, 2항을 제안 받은 대의원회는 5일 이내에 심의, 확정해야 한다.

제38조(예산집행)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진행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다.

제39조(예산관리 및 지출) 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가 담당하고 인출 및 집행은 본회 해당기구에서 요청 시 학생자치회장이 학교 당국을 경유하여, 학생자치회 회장의 결재와 확인에 의하여 행하고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39조(결산보고)

1. 운영위원회는 결산보고서를 매학기 작성하여 대의원회와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는 결산보고 내용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 예산의 실행은 매 학기 대의원회의, 학생지도위원회에 감사를 받는다.

제 8 장 선거

제41조(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42조(선거시기)

1.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는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20일 전에 할 수 있다. (과대표, 대의원 삭제)
2. 대의원의장, 학년대표, 각부서 부장을 선출하여 당해연도 7월초부터 익년 6월말까지 임기를 유지시킨다. (1학년에 한해서 삭제)
3. 학생자치회장은 선거 일자를 정하고 선거일로부터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 운동은 공고 날로부터 할 수 있다.

제43조(임기)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 과대표, 대의원 및 대의원회 의장, 집행부 및 동아리 부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7월 초부터 익년 6월 말까지로 한다.

제44조(회장과 부회장)

1. 회장 입후보자는 본원 2학기 등록자 이상이어야 하며, 부회장 입후보자는 1학기 등록 이상자가 되어야 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전 학기 학업 성적이 B이상 되는 후보자를 원칙으로 한다.
3.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입후보 등록하며, 학생자치회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각각 최다득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4. 과대표는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위 득표자를 학급총무로 한다.
5. 대의원은 과대표 선거시 별도로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1, 2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5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연도 대의원회의 의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자로 대의원회 의장이 임명한다.
3.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및 과대표, 대의원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장 임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후 자동적으로 해체한다.

제56조(보궐선거)

1. 학생자치회 회장의 궐위 시 그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에 궐위 일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50일 이내일 경우에는 학생자치회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부회장 유고시 학생자치회 회장이 대의우연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학생자치회 회장이 임명한다.
3. 대의원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이 의장 권한을 대행하며 부의장이 공석일 겨우 상위 하년의원 순으로 의장 권한을 대행한다.
4.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이 불신임으로 인해 유고일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7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 절차 및 선거 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9 장 회칙 개정

제48조(발의) 회칙 개정안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0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발의가 있을 때
3. 회원 20%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10인 삭제)

제49조(의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시의 검토를 거쳐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회부하여 결의한다.

제 10 장 협의체

제49조(구성)

1. 본교의 평생교육원 협의체는 본회를 포함한 목회학석사과정, 목회신학원으로 구성한다.
2. 본 협의체의 의장은 평생교육원, 목회학석사과정, 목회신학원 임원의 투표로 인하여 최다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한다.

제50조(행사) 본교 행사는 평생교육원, 목회학 석사과정, 목회신학원은 서로 협력한다.

제51조(운영) 의장은(제49조 2항) 본교 행사를 위해서 협의체 소속 학생회의 임원을 소집하며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52조(비용) 의장은 본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각 과정에 학생회비에서 지원을 받고 기타 기관에서 후원을 받는다.

제11장 산하 상설기구

제1절 장학위원회

제53조(설치) 본회에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54조(구성) 장학위원회는 평생교육원회장 및 부회장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제55조(임무)

1.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추천하여 학교의 장학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2. 장학위원회는 본회에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6조(의장) 장학위원회의 의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이 된다.

제57조(소집) 본 위원회는 **매 학기 말에 학생자치회 회장**이 소집한다. (장학 위원회 2주 전에 의장 삭제)

제58조(감사) 본 위원회의 결산 감사는 **학생처장과**, 대의원회에서 감사한다.

제2절 수료 준비 위원회

제59조(설치) 본회에 수료 준비 위원회를 둔다.

제60조(구성)

1. 수료 준비 위원회는 수료예정 학년의 과대표와 수료예정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2. 수료여행은 목회학석사과정과 목회신학원과 협조하여 진행한다.
3. 수료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은회에 필요한 경비는 수료위원회에서 관리한다.
4. 수료준비위원회는 수료비를 입학 후 첫 학기부터 분할하여 내게 한다.

제61조(의장) 수료 준비 위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 의장**을 겸할 수 있다.(학생자치회회장이 된다.삭제)

제58조(소집) 본 위원회는 **4**학기를 등록할 회원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59조(감사) 본 위원회의 결산 감사는 학생지도위원회와 대의원회에서 한다.

별 칙

제1조(선출) 제3장 14조 근거하여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2조(감사) 대의원회에 행정회계 감사장을 둔다.

1. 감사장은 전임 학생자치회 회장이 하며, 대의원 중에서 감사 1명을 선임하고 감사장을 보좌하며 감사장의 임기 만료시 감사장이 된다.
2. 감사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 한다. (12월까지 삭제)
3. 감사는 년2회하며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

제3조(상조회) 상조회를 둔다.

1. 제35조 2항의 특별회비에서 지급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비에서 충당할 수도 있다.
2. 본 회원과 교수 및 배우자, 부모, 자녀의 애경사시 규정에 따라 소정의 상조금을 지급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